



# 유권자 정보 팜플렛



시 서기 HOLLY L. WOLCOTT 편집

★ 시 총선거 ★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 선거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문의는 1-888-873-1000

Los Angeles시에서는 영어뿐 아니라 다음  
언어로도 유권자 정보를 지원합니다.

Այս բրոշյուրի հայերեն օրինակն ստանալու համար  
զանգահարեք 1-800-994-VOTE (8683) հեռախոսահամարով:

要索取本手冊的中文版·  
請致電 1-800-994-VOTE (8683)

برای تهیه‌ی نسخه‌ای از این جزوه به زبان فارسی، با شماره تلفن  
1-800-994-VOTE (8683) تماس بگیرید

हिन्दी में इस पैम्फलेट की प्रति प्राप्त करने के लिए,  
1-800-994-VOTE (8683) पर फोन करें

このパンフレットの日本語版をご希望の方は、  
1-800-994-VOTE (8683)までお電話ください。

ដើម្បីទទួលបានឯកសារថតចម្លងមួយច្បាប់ពីកូនសៀវភៅនេះជាភាសាខ្មែរ  
សូមហៅទូរស័ព្ទលេខ 1-800-994-VOTE (8683)

이 팸플릿을 한국어로 원하시면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1-800-994-VOTE (8683)

Для получения копии данной брошюр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00-994-VOTE (8683).

Para obtener una copia de este folleto en español,  
llame al 1-800-994-VOTE (8683)

Para makakuha ng kopya ng pamplet na ito sa Tagalog,  
tumawag sa 1-800-994-VOTE (8683)

เพื่อขอสำเนาจลสารนี้ในภาษาไทย โปรดโทรศัพท์ติดต่อที่หมายเลข  
1-800-994-VOTE (8683)

Muốn có một tập sách này bằng tiếng Việt, hãy gọi số  
1-800-994-VOTE (8683)

# 목차

	페이지
투표법안 요약.....	3
<hr/>	
투표 법안, 논증 및 본문	
헌장수정안 제 LL호 .....	4

## 유권자 정보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등록국/카운티 서기는 Los Angeles 시의 시 선거 관리자입니다.

본 팜플릿은 시/Los Angeles 통합교육구 (LAUSD)의 2024년 11월 5일 시 총선거에 대한 투표 법안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투표소와 같은 선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LA 카운티에 (800) 815-2666번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웹사이트 [www.lavote.gov](http://www.lavote.gov)를 방문하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시 투표 법안의 간소화된 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정보를 비롯한 법안의 전문은 투표 요약 이후에 인쇄되어 있습니다(목차 페이지 참조).



# LOS ANGELES 시 현장수정안 제 LL 호

## 제목: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독립 재구획 위원회.

## 쟁점:

10년마다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내에서 교육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리는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시 현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 상황:

현재 시 현장에 따르면 자문위원회가 10년마다 Los Angeles 통합교육구(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LAUSD)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선거구 경계를 검토하여 시의회에 선거구 경계 변경을 권고해야 합니다. 의회와 시장이 최종 선거구 경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시는 선거구 경계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제안 내용:

이 법안은 시 현장을 변경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 의회나 시장의 개입 없이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 조사에 따라 LAUSD 위원회 선거구 경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현장 및 기타 시 법률에 명시된 선거구 재구획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 선거구 재구획 과정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 대중에게 선거구 재구획에 대해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합니다.
- 시 공직자에게 선거구 재구획 과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 시 법률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타 구역 선거구 재구획 작업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14명의 위원과 4명의 교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독립 재구획 위원회의 위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됩니다.

시 법률에 설명된 바와 같이, LAUSD 공직자, 직원, 장관, 로비스트 또는 LAUSD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운동에 기부한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 찬성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LAUSD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10년마다 다시 그리기 위해 시에서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 반대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LAUSD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10년마다 다시 그리기 위해 시에서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의 전문은 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0년마다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내에서 교육 위원회 지구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독립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시 헌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 공정한 요약

SHARON M. TSO, 수석 입법 분석관 작성

Los Angeles 시 헌장(이하 헌장)은 Los Angeles 통합교육구(LAUSD)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10년마다 그리고 연방 인구 조사 후 조례에 의해 채택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위원회 선거구 경계는 모든 위원회 위원 선거, 해임, 위원회 공식 채우기에 사용됩니다. 현재 임명된 자문위원회는 재구획 과정 동안 그러한 경계를 변경하도록 시의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시장이 최종 선거구 경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법안은 연방 인구 조사 이후 10년마다 위원회 지구 경계를 채택할 권한,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 재구획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헌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미국 헌법, California 헌법 및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여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그려야 하며, 헌장과 기타 시 법률에 명시된 재구획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개입 없이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최종 위원회 선거구 경계는 위원회에 의해서만 승인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재구획에 관해 대중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공청회와 청문회를 진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 및 고려하고, 재구획 과정과 관련하여 시장,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시 법률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타 재구획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공청회 외에 재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조직과 소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원회는 시 법률이 승인한 바에 따라 18세 미만의 개인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개입 없이 선정되며, 14명의 위원과 4명의 교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연방 인구 조사가 실시된 후 10년마다, 늦어도 숫자가 0으로 끝나는 각 해의 4월 1일까지는 설치됩니다. 위원회의 각 위원은 선출된 날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선출되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출 당시에 18세 이상이며 LAUSD 거주자여야 합니다.
- 지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최소 3년 동안 LAUSD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 협업 기술, 공적 참여 경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등록된 유권자 또는 미국 시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어떤 사람도 지원서 제출 전 최소 4년 동안 LAUSD 직원 또는 LAUSD 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독립 재구획 위원회의 자격 요건에 관한 California 주 선거법 조항에 명시된 정치 및 로비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원회 위원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역과 기타 재산 공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인은 교육위원회 선출직 위원이나 교육위원회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이들을 위해 일하거나, 자원 봉사를 하거나, 선거운동 기여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집행기구의 재구획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위원은 직무를 상당히 소홀히 하거나 직무상 기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해임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해임은 시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 사무국이 위원회 신청 절차를 관리하고 윤리위원회가 감독을 담당합니다.

이 헌장 수정안은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정적 영향 보고서 MATTHEW W. SZABO, 시 행정관 작성

이 법안은 10년마다 Los Angeles 통합교육구(LAUSD)를 위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 보상은 현재 알려지지 않은 금액으로 조례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시 사무국과 윤리위원회가 위원 선출을 지원하고, 시 사무국이 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 보상은 조례를 통해 정해지고, 시 부서 행정 비용은 행정 절차가 수립되면 시의 연간 예산 절차의 일부로 처리되지만, 실제 비용은 위원 업무량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2028~29년부터 부분 연간 비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일반 기금에 \$1,163,746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9~2030년 전체 연간 비용은 \$2,485,756로 추정됩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간에 누적되는 비용은 약 \$6,161,630로 예상됩니다. 비용은 LAUSD에 의해 보전됩니다.



## 현장수정안 제LL호에 대한 찬성론

### 현장수정안 제LL호에 대한 찬성 – Los Angeles 통합교육구 독립 재구획 위원회

Los Angeles 통합교육구(LAUSD)의 가족과 학생은 정치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커뮤니티의 대표성을 우선시하는 선거구 재구획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 선거구 재구획 절차는 위원회 선거구 경계가 설정되는 위치를 결정하고, LAUSD 위원회에서 어떤 커뮤니티가 대표성을 가지는지, 어떤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는 현직 정치인들이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결정합니다. 이 절차는 LAUSD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 가족,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정치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정치인이 아닌, 국민에게 재구획할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는 LAUSD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중요한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정치인과 완전히 분리할 것입니다.** 독립 재구획 위원회는 California의 다른 수많은 관할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초당파적 개혁입니다. 이를 통해 LAUSD 내에 거주하는 선입견이 없고 편향적이지 않은 주민들이 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 독립 재구획 위원회 위원에게 정치인의 영향 없이 LAUSD의 새로운 선거구 재구획 계획을 채택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대중의 의견을 요구합니다.
- 선거구 내 도시와 비통합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LAUSD 커뮤니티의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 관심 커뮤니티가 위원회 선거구에서 진정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 게리맨더링을 금지하고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현재 LAUSD 학생의 학부모와 보호자가 위원회에서 대표성을 갖도록 합니다.
- 청소년과 학생, 교육구 직원과 교사 등을 포함한 LAUSD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는 2030년에 중요한 업무를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할 것입니다.

**헌장수정안 제LL호에 찬성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헌장수정안 제LL호에 대한 찬성론 서명자**

COMMON CAUSE  
Dan Vicuna  
재구획 및 대표성 이사관

JACKIE GOLDBERG  
위원회 의장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TANYA ORTIZ FRANKLIN  
위원회 위원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HECTOR SANCHEZ  
부 정치이사관  
Community Coalition

JOHN KIM  
의장 겸 CEO  
Catalyst California

DAVID LEVITUS  
집행이사관  
LA Forward Institute

VANESSA ARAMAYO  
CEO 겸 회장  
Alliance for a Better Community

**이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 현장수정안 제LL호에 찬성하는 반박론

현장수정안 제LL호에 찬성 투표를 하면 학부모, 가족, 일반 시민이 Los Angeles 통합 교육구(LAUSD)의 선거구 재구획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정치인이 유권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는 선거구 **재구획 과정에서 LAUSD 학생과 가족을 우선시하고** 정치인들이 교육 선거구 경계를 게리맨더링하지 못하게 예방합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 투표를 하면 자격을 갖춘 편견 없는 커뮤니티 회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가 이 과정을 주도하는 것을 지지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은 LAUSD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구를 그리는 과정에 내재된 이해상충을 제거합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를 도입한 관할 구역에서는 시민의 참여도가 높고 게리맨더링이 적으며 개별 정치인의 이익이 아닌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선거구가 존재합니다.” – Los Angeles Times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시민의 이익을 우선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에 **찬성**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 현장수정안 제LL호에 찬성하는 반박론에 서명하는 사람

CALIFORNIA COMMON CAUSE  
Russia Chavis Cardenas  
투표권 및 재구획 프로그램 관리자

DR. LORAIN LUNDQUIST  
전 위원  
2021년 LAUSD 재구획 위원회

EDDIE ANDERSON 목사  
2020년 LA 시 재구획 위원회 위원

KRISTINE WILLIAMS  
부의장 - 전략적 이니셔티브  
커뮤니티 개발 기술 센터

HENRY PEREZ  
집행이사관  
InnerCity Struggle

LAURICE SOMMERS 및 MARY DICKSON  
공동 의장  
Los Angeles 지역 여성 유권자 연맹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헌장 또는 기존 헌장 절에 추가되는 새 조항이나 문구는 밑줄로 표시되고, 헌장 또는 기존 헌장 절에서 삭제되는 단어는 취소선으로 표시됩니다.

## 헌장 수정안 11호

섹션 1. Los Angeles 시 헌장에 추가된 섹션 810~819는 다음과 같습니다.

###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독립 재구획 위원회.

#### 섹션 810. 위원회 설립 및 목적.

(a) 헌장 및 조례에 규정된 권한, 의무 및 책임을 갖는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독립 재구획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있습니다.

(b) 위원회의 목적은 시민의 참여와 절차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에 힘을 실어주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독립적인 재구획 절차를 통해 교육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섹션 811. 위원회 조직, 권한 및 의무.

(a) 위원회는 14명의 위원과 4명의 교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b)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 후 새로운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위원회 위원은 숫자 0으로 끝나는 각 해의 4월 1일까지 선출됩니다.

(c) 위원회의 각 위원 임기는 해당 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시작되며, 후임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만료됩니다.

(d)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1) 10년마다 실시되는 각 연방 인구 조사 후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의 교육 위원회 선거구 경계 채택

(2) 헌장 및 조례에 명시된 선거구 재구획 기준과 절차 준수

(3) 선거구 재구획 과정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이행

(4) 선거구 재구획에 대해 시민에게 교육하고 알리고, 선거구 재구획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요청하고 장려하며, 접근 가능한 공개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선거구 재구획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선거구 재구획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 시의회 및 시 윤리위원회에

권고

(6) 조례에 규정된 기타 재구획 기능 수행.

(e)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거쳐 선정된 청소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섹션 812. 위원 자격 및 제한 사항.**

(a) 각 위원회 위원은 조례로 더 낮은 최소 연령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위원회 위원은 선정 당시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3년 이상 Los Angeles 통합 교육구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원은 등록된 유권자 또는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b)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4년 동안 한 번이라도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직원 또는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지원하거나 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c)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의 자격 요건에 관한 California 주 선거법 조항에 명시된 정치 및 로비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지원하거나 위원회에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d) 위원회 지원자는 협업 기술, 공적 참여 경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위원회 위원은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선출직 교육위원회 공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공직 후보를 위해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선거운동 기부금을 낼 수 없으며, 다른 정부 기관의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f) 위원회 위원 또는 전 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더 짧은 것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10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원회의 선출직 후보자가 되는 것.

(2) 위원으로 활동했던 위원회에서 채택한 선거구 경계를 사용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교육위원회 선출직 후보자가 되는 것.



(g) 더 짧은 것을 기준으로, 위원회 위원 또는 전 위원은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4년 동안 또는 위원회에 선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Los Angeles 통합 교육구의 다른 위원회 임명의 수락.

(2)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선출직 교육위원회 후보자의 유급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컨설턴트로서 보수를 받는 행위.

(3)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와 비경쟁 입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의 등록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행위.

(5)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의 다른 공직에 대한 임명의 수락.

(h) 위원회 대체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자격 요건, 행동 기준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섹션 813. 위원 선정 및 해임.**

(a) 예비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숫자 9로 끝나는 각해의 4월 1일까지 시작해야 합니다.

(b) 시 사무국이 위원회 신청 절차를 관리하고 시 윤리위원회가 감독을 담당합니다. 시 사무국 및 시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책임을 직원 또는 컨설턴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c) 시 사무국은 위원회 신청 절차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아웃리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소외된 커뮤니티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과 조례에 명시된 대로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 사무국은 제출된 신청서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하며, 지원자 풀에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보유하고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아웃리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d) 위원회에서 활동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해관계자는 시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 사무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섹션 812의 부속조항 (a)부터 (c)까지 명시된 객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구성된 지원자 풀을 구축해야 합니다.

(e) 시 사무국은 공개 검토를 위해 지원자 풀에 개인의 이름을 게시하고, 시민이 지원자 풀에 있는 개인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 윤리위원회는 시민이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여 지원자 풀에서 특정 개인을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f) 공개 검토 기간 이후, 시 윤리위원회는 지원자 풀에 있는 개인의 신청서를 평가하여 섹션 812의 부속조항 (a)부터 (d)까지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파악하고 누가 위원회 선정 풀에 포함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 선정 풀이 구축된 후, 시 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위원회 선정 풀에 포함된 개인의 지속적인 자격 요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습니다.

(g) 시 사무국은 공개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7개 교육위원회 지역에서 각각 1명을 선정합니다. 이 선정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7개 교육위원회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총 7명을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h) 선정된 7명의 위원은 위원회 선정 풀에 있는 나머지 모든 지원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7명의 위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이러한 선정은 인종, 민족, 성별, 젠더, 성적 지향, 연령, 소득, 직업, 지리적 다양성 등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관련 경험과 배경,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지역에 대한 친숙함,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초기 위원 7명 중 2/3의 투표로 공개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단,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식이나 비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선정은 위원회 위원 14명 중 최소 4명이 선정 시점에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라는 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i) 14명의 위원이 선정되면 위원회는 위원회 선정 풀에 있는 나머지 지원자 중에서 4명을 대체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대체 위원의 선정은 대체 위원 간의 지리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j) 위원회는 중대한 직무 태만, 중대한 직무상 위법 행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섹션 812에 명시된 위원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단 결석 또는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위원에게 공청회를 고지하고 서면 및 공청회에서 답변할 기회를 제공한 후 위원회의 2/3가 찬성해야 합니다. 해임된 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 위원회는 중범죄 혐의를 받거나 섹션 207(c)에 설명된 공무원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형사 경범죄의 혐의를 받는 위원을 즉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해임은 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해임된 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 위원이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위원직은 공석이 됩니다.

(m)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체 위원 중 1인을 위원으로 선출합니다.



## 섹션 814. 재구획 기준.

(a) 위원회는 미국 헌법, California 주 헌법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는 통합 교육구 경계를 채택해야 합니다. 각 선거구는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편차가 요구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거구와 합리적으로 동등한 인구수를 가져야 합니다.

(b) 위원회는 부속조항 (a)의 요건을 따르는 것 외에 다음 우선순위와 기준에 따라 교육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채택해야 합니다.

(1) 선거구는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합니다. 인접한 모서리 지점에서만 만나는 지역은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수원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리, 터널 또는 정기 페리 서비스로는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인접한 지역이 아닙니다.

(2) 이 부속조항의 이전 기준과 상충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서 지역 동네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지리적 통합성은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커뮤니티"란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성을 위해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구 집단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커뮤니티의 특성에는 교육, 공공 안전, 공중 보건, 환경, 주택, 교통, 사회 서비스 이용과 같은 공공 정책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커뮤니티의 특성에는 또한 문화권, 공유된 사회경제적 특성, 유사한 유권자 등록률 및 참여율, 공유된 역사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커뮤니티에는 정당,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와의 관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 있고 이 부속조항의 이전 기준과 상충하지 않는 경우, 선거구는 자연 및 인공 장벽, 거리 또는 Los Angeles 통합 교육구의 경계에 따라 경계가 결정됩니다. 선거구 경계는 주민들이 쉽게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 있고 이 부속조항의 이전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 더 멀리 있는 인구를 위해 가까운 인구를 우회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리적 밀집도를 높여 선거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c) 위원회는 현직자, 정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유리하게 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선거구 경계를 획정해서는 안 되며, 현직자 또는 후보자의 거주지는 선거구 경계 획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d) 위원회는 선거구 경계를 채택할 때 경제 및 문화적 랜드마크 및 자원에 대한 커뮤니티 및 문화적 연관성을 고려하는 등 기타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기준에 관한 모든 결정은 공개 회의에서 고려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추가 기준은 부속조항 (a)부터 (c)까지의 해당 요건을 준수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e) 위원회가 선거구 경계를 채택한 후, 위원회는 가능한 한 많은 주민에 대해 거주지 교육위원회 선거구 수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교육위원회 선거구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 **섹션 815. 공개 회의, 아웃리치 및 접근성**

(a) 위원회는 랄프 엠 브라운법 및 기타 해당 공개 회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위원회는 소외된 커뮤니티와 비영어권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선거구 재구획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위원회는 선거구 재구획 절차의 각 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청회와 워크숍을 개최해야 합니다.

(d) 위원회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위원회 회의에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며,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연방법 및 주 법률에서 요구하는 언어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e) 위원회는 장애인과 노인이 위원회 회의 및 청문회에 접근하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f) 증언 제공의 목적상, 시 교육위원회 위원은 시민과 동일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g) 일방적인 의사교환.

(1) 위원회 위원은 공개 회의 외에는 선거구 재구획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다른 위원, 위원회 직원, 법률 고문 또는 위원회가 고용한 컨설턴트와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 문제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는 경우 시 직원 및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2) 위원회의 전무, 위원회의 지도제작 직원 또는 지도제작 컨설턴트,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위원회 직원은 공개 회의 외에는 선거구 재구획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선출직 시 공직자, 선출직 교육위원회 또는 시 공직 후보자 또는 해당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직원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행정 문제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는 경우 시 직원 및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3) 시 윤리위원회 위원, 시 사무국 또는 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에 관여하는 기타 시 부서의 위원이나 직원은 해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개 회의 외부에서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선출직 시 공직자, 선출직 교육위원회 또는 시 공직 후보자, 그 직원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출 절차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행정 문제, 법률 자문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는 경우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4) 위원회는 해당 규칙이 브라운법을 준수하고 이 부속조항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공개 회의에서 채택된 경우, 의사소통에 관한 다른 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섹션 816. 위원회의 사무, 행정 및 인사 행동 강령.**

(a) 위원회의 각 위원과 대체 위원은 California 주 정치개혁법에 따라 채택된 위원회 이해충돌 규범을 준수하여 지정된 직원이어야 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 윤리위원회에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및 기타 재정 공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위원회의 2/3가 승인해야 하는 다음 조치를 제외한 공식 조치에는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 표결이 필요합니다.

(1)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에 대한 투표

(2) 위원 해임 투표

(3) 섹션 813(h)에서 설명하는 위원 7명의 선정 투표

(4) 최고책임자, 지도제작 자문위원 또는 지도제작 직원, 위원회에서 핵심 직원으로 지정한 기타 직책의 채용을 위한 투표

(5) 주 및 시 법률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 또는 계약 권한의 위임을 승인하는 투표

(c) 위원회의 대체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할 수 없으며, 정족수 성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할 위원 1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다른 공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 초안 및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에 대한 선거구 경계 개발 원칙은 공개 회의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의 투표로 승인됩니다.

(f) 위원회는 위원회 청문회 또는 회의에서 고려하기 전에 제안된 지도 원칙 및 제안된 최종 지도를 위원회 웹사이트에 최소 7일 동안 게시해야 합니다.

(g) 위원회는 최고책임자 및 선거구 재구획, 기술 및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이 직책은 현장의 공무 수행 조항에서 면제됩니다.

(h) 위원회는 현장의 계약 조항과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경쟁 절차를 통해 컨설턴트를 고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i) 시 사무국은 위원회가 시 자원에 접근하고, Los Angeles 시 및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부서 및 직원과 협력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행정적 문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j) 위원회는 시 검사를 법률 고문으로 활용하거나 시 검사에게 위원회를 위한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817. 최종 재구획 계획의 채택.**

(a) 위원회는 늦어도 숫자 0으로 끝나는 각 해의 9월 30일까지 새로운 교육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을 채택해야 합니다.

(b) 위원회가 부속조항 (a)의 기한까지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시 검사는 즉시 상급 법원에 섹션 814에 설명된 재구획 기준에 따라 새로운 교육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규정하는 명령을 청원해야 하며, 해당 경계는 위원회가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을 채택할 때까지 교육위원회 선거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c) 위원회는 최종 계획과 더불어, 섹션 814에 설명된 선거구 재구획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d)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이 채택되면 위원회는 계획, 최종 보고서 및 기타 첨부 자료를 시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 자료를 위원회의 선거구 재구획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e) 시 사무국은 위원회의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과 보고서를 시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시 사무국은 시 조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교육위원회 선거구 경계에 대한 최종 계획과 설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f) 새로운 교육위원회 선거구를 설정하는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은 현장 조례 규정에 따라 공표된 날로부터 31일 후에 발효됩니다.



(g)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은 시 조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h) 선거구 재구획 설정으로 인한 선거구 경계 또는 위치 변경은 해당 교육위원회 위원이 선출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 위원의 임기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i) 위원회가 채택한 선거구 경계는 법적 소송을 해결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번 연방 10년 인구 총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j) 시에 합병되거나 시와 통합된 지역은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가 인접한 선거구에 추가합니다. 이는 합병 또는 통합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섹션 818. 위원회 자금 조달.**

(a) 시의회와 시장은 위원회 직원, 컨설턴트 및 법률 고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선거구 재구획 절차에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서 위원회의 행동을 변호하는 등과 같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b) 시의회와 시장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지원, 위원회 기록 유지와 관련된 모든 시 부서에 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c)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시 부서를 포함하여 Los Angeles 시에서 발생한 비용을 시에 환급해야 합니다.

(d) 위원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 **섹션 819. 위원회 권고.**

(a)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 분석 및 데이터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시 헌장 및 행정법에 명시된 독립적인 선거구 재구획 절차의 변경을 시 윤리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b) 시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고 선거구 재구획에 관한 시 헌장 및 행정법 개정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권고안에 행정법의 개정이 포함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시 감사의 도움을 받아 권고된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을 준비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c) 행정법의 개정. 시의회는 선거구 재구획에 관한 행정법 개정을 권고하는 윤리위원회 보고서 및 그에 수반되는 조례안이 제출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조례안을 변경 없이 승인하거나 비승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의회가 6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제안된 조례안은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상정되며, 시의회에는 시장의 거부권을 재의결할 수 있도록 상정됩니다. 시장이 승인하거나 시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장의 거부를 뒤집고 의회가 승인한 경우, 제안된 조례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 현장 개정. 선거구 재구획에 관한 시 현장 개정을 권고하는 윤리위원회 보고서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현장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시기적절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시 현장을 개정하려면 시 유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섹션 2.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802는 다음과 같이 폐지됩니다.

### **섹션 802. 교육위원회 선거구 재구획.**

(a) 조례에 따른 선거구 재구획. 시의회는 10년마다 조례에 따라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를 1학군부터 7학군까지 조례에 지정된 7개 학군으로 재분할합니다. 해당 선거구는 조례 발효일 이후 새로운 선거구가 신설될 때까지 교육위원회 위원회 소환을 포함한 모든 선거와 교육위원회 위원직의 결원 충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b) 재구획 위원회.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에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됩니다: 교육위원회 각 위원에 의해 1인, 시의회 의장에 의해 4인, 시장에 의해 4인. 섹션 501(d)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 한 명과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 한 명은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에 속하되, 시 경계 밖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교육구의 임원이나 직원은 위원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는 예산 승인에 맞추어 이사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하며, 이 직책은 현장의 공무 수행 조항에서 면제됩니다.

(c) 재구획 절차. 재구획 위원회는 인구 조사국이 10년마다 인구 조사 데이터를 발표하는 날짜 전까지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후 선거구 구획을 다시 설정하기 전에 시의회에 자문을 제공할 새로운 위원회가 임명됩니다. 위원회는 임명 후 언제든지 선거구 재구획 절차를 시작하되, 늦어도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 10주년이 되는 날짜까지 시작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선거구 재구획 절차 전반에 걸쳐 시민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조례로 정한 날짜까지 선거구 재구획 제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늦어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 10년이 되는 날짜까지 선거구 재구획 조례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선거구에 선거구 구획 설정 직전의 연방 인구 조사 또는 시의회가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타 인구 보고서/추정치에 근거한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전체 인구의 거의 동일한 부분이 포함되는 한, 이 절의 어떠한 조항도 시의회가 더 자주 선거구 구획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d) **재구획 기준.** 모든 선거구는 주 및 연방법의 요건을 준수하여 구획이 설정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지역과 커뮤니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연 경계 또는 도로선을 활용하고 지리적으로 간단해야 하며 고등학교 통학 구역에 상응해야 합니다.

(e) **선거구 재구획이 현직자에게 미치는 영향.** 선거구 재구획 설정으로 인한 선거구 경계 또는 위치 변경은 해당 교육위원회 위원이 선출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 위원의 임기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f) **합병 또는 통합.** 선거구 구획 설정 조례가 채택된 후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에 추가되는 지역은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인접한 선거구에 추가합니다.

(g) **임기.**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섹션 80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4년입니다. 홀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섹션 80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9년으로부터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며, 짝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81년으로부터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어 2020년까지로 합니다. 2020년부터 홀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20년으로부터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며, 짝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22년으로부터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됩니다. 누구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세 번 이상 임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기 횟수 제한은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의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만료되지 않은 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기 횟수 제한은 2007년 3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임기에만 적용됩니다.

섹션 3.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806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섹션 806. 교육위원회 공직 임기.**

(a)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부속조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4년입니다.

(b)(a) 헌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새로운 선거 날짜로 전환하기 위해 2015년에 선출된 교육위원회 위원은 2020년 12월에 만료되는 임기로 선출되며, 2017년에 선출된 위원은 2022년 12월에 만료되는 임기로 선출됩니다.

(c)(b)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부터 홀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0년으로부터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됩니다. 짝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2년으로부터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자신의 선출 직후 12월의 두번째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d)(c) 누구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세 번이 넘는 임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기 횟수 제한은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의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1/2 미만인 경우의 만료되지 않은 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기 횟수 제한은 2007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임기에만 적용됩니다. 이 섹션의 목적에 따라 섹션 802(g)에



포함된 임기 제한의 경우, 이 섹션의 부속조항 (b)(a)에 설명된 대로 2015년과 2017년에 선출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하나의 임기로 간주합니다.

섹션 4. 이 헌장 개정안의 어떤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관할 법원이나 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나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이 조의 나머지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그를 위해 이 조항의 규정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는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정된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없었다면 이 헌장 개정안의 모든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을 통과시켰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 유권자의 권리

##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1. 유권자가 등록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권리.**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 ★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 ★ 18세 이상
  - ★ 현재 거주지에서 등록
  - ★ 중죄 유죄선고로 현재 연방 또는 주 교도소 복역 중이 아닌 경우 및
  - ★ 현재 법원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정신적 무능력자라는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
- 2. 등록 유권자인 경우 명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투표할 권리.**  
유권자는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합니다. 선거관리 담당관이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유권자의 투표는 집계됩니다.
- 3. 투표소가 폐장되었을 때 여전히 줄을 서있는 경우 투표할 권리.**
- 4. 비밀투표를 할 권리.** 어떤 사람도 유권자를 귀찮게 하거나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 5. 이미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유권자가 실수를 했을 때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  
투표소에서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새 투표용지를 달라고 요청하거나, 선거관리 사무소 또는 투표소에서 우편투표용지를 교환하거나, 잠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6.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 유권자가 선택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는 제외.
- 7. 작성한 우편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직접 투입할 권리,** 캘리포니아 주에서.
- 8.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 해당 선거구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은 경우.
- 9.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질문할 권리,** 선거 과정을 감시할 권리 포함.  
유권자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를 적합한 사람에게 보내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방해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0.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선거 활동을 신고할 권리,** 선거관리 담당관 또는 총무처장관실로 신고.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핫라인 (800) 345-VOTE (8683) 로 전화하십시오.

🌐 웹사이트: [www.sos.ca.gov](http://www.sos.ca.gov)

☎ 전화번호: (800) 345-VOTE (8683)

✉ 이메일 주소: [elections@sos.ca.gov](mailto:elections@sos.ca.gov)



# 투표자 접근가능성 정보



## 편의 시설 및 기타 보조 장치

**(800) 815-2666, 옵션 4(LA 카운티 핫라인)**

LA 카운티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 및/또는 거리 투표를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는 투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 오디오 녹음 (213) 978-0444

모든 투표소에서 오디오 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포함된 법안의 오디오 녹음은 영어,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녹음은 저희 웹사이트 [clerk.lacity.gov/elections/multilingual-services](http://clerk.lacity.gov/elections/multilingual-services) 와 다음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Braille Institute Library  
741 North Vermont Avenue  
Los Angeles, CA 90029  
(323) 660-3880

Central Library  
630 West 5<sup>th</sup> Street  
Los Angeles, CA 90071  
(213) 228-7000

유권자는 시 사무국-선거관리부로 음성 녹음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Office of the City Clerk-Election Division  
Attn: Audio Recordings  
555 Ramirez Street, Space 300  
Los Angeles, CA 90012



## 청각장애인(TTD) 전화번호 (562) 462-2259

청각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TTD 전화번호가 제공됩니다.



## 언어 지원 (213) 978-0444

시는 또한 투표 자료를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민 의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십시오

주민 의회는 Los Angeles 시 정부의 주민 참여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한 지역 문제에 관해 시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처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 지역사회 개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도로 및 보도 수리, 범죄 퇴치, 교통 관리 등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합니다.
- 주민 의회가 연간 운영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LA의 99개 주민 의회는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자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지역사회 내에 기반을 둔 봉사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

[www.99NCs.com](http://www.99NCs.com)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 의회를 찾고 다가오는 2025 주민 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EmpowerLA@LAcity.org](mailto:EmpowerLA@LAcity.org)로  
이메일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213) 978-1551 (오전 9시 - 오후 5시 / 월 - 금)

Department of Neighborhood Empowerment  
200 North Spring Street, Room 2005, Los Angeles, CA 90012  
[www.EmpowerLA.org](http://www.EmpowerLA.org)



# 주요 일정

<b>10</b>		10월					20 24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24년 10월 7일

- Los Angeles 카운티 등록-접수 처/카운티 사무국이 늦어도 이 날 짜까지 우편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우편투표 투표함의 운영이 시작됩니다.

## 2024년 10월 21일

투표 등록 마감일(조건부 투표의 경우 당일 유권자 등록가능)

<b>11</b>		11월					20 24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024년 11월 5일

선거일  
투표 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OFFICE OF THE CITY CLERK  
ELECTION DIVISION  
555 RAMIREZ STREET  
SPACE 300  
LOS ANGELES, CA 90012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CITY OF LOS ANGELES  
ELECTION DIVISION

